

[별첨 2]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제38조의2(위원회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수위원회</li> <li>2.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</li> <li>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li> </ol> <p>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 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